

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39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을 신설하여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재기재 및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·부담을 해소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신설(안 제3조의2)

1)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,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

나. 법령 등 재기재사항 삭제

1) 정의, 위원 기능·수당, 가산금, 시행규칙(안 제2조·제4조·제10조·제20조·제22조)

다. 실효 규정인 지하수특별회계 삭제(안 제3장(제12조~제16조))

1) 근거: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 5. 28.)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

2) 내용

가)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

나) 개정당시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2018. 12. 31. 까지로 존속기한 만료

라.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등 변경(안 제19조·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하수법」 제14조, 「지하수법 시행령」 제22조,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 제17조, 「지방재정법」 개정(2014. 5. 28.) 부칙 제4조제2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1. 2. 5.~3. 2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의 “제1장 총칙”을 삭제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규칙 및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수”를 “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”을 “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)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50
2.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30

제4조 앞의 “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”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)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
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3장(제12조부터 제16조까지)을 삭제한다.

제17조 앞의 “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”을 삭제하고,
제17조 조 제목 “(부과·징수)”를 “(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)”로 하며
같은 조 제2호 중 “제4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본문 중 “유량계”를 “유량계(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, 적산유량계·시간계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(전산용 2)”을
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
삭제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”을
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2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지하수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<u>시행규칙 및 「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」</u>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삭 제></p> 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지하수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<u>시행규칙</u>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<u>제2조(정의)</u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지하수개발·이용자”란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·양도·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지하수이용부담금”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p> <p>3. “유량계”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, 적산유량계·시간계 등을 포함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3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</u> 군수는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「지하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</p>	<p><u>제3조(수질검사 수수료 보조)</u> <u>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</u>는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「지하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지하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</p>

2.~3. (생략)

2.~3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제3조의2(이행보증금의 감정기준)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: 100분의 50
- 2.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30

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

<삭 제>

제4조(설치 및 기능)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)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1.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
- 3.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
- 4.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지하수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

<삭 제>

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

제12조(설치)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·이용과 보전·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13조(세입)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제14조(세출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
2.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용도
3.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
4.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에 드는 인건비, 재료비 등의 비용
5.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·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,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.

제16조(관리 및 운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예산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

제17조(부과·징수) 군수는 법 제30

<삭 제>

<삭 제>

제17조(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·징수)

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·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
2.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
3.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경우

제18조(산정방법) ①~② (생략)

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9조(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)

①~② (생략)

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(전산용 2)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·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
2.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
3.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경우

제18조(산정방법) ①~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(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, 적산유량계·시간계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)

①~② (현행과 같음)

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<삭제>

제20조(가산금)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제21조(부과액 조정신청)

①~② (생략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제21조(부과액 조정신청)

①~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삭 제>